

의안번호	2207442
의 퇴 인	박용갑 의원
회 답 일	2024. 2. 17.
추 계 번호	25B018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의2 (항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항공안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제1항) 1.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항공기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기능장애 및 정비,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공항시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 등에 관한 사항 6. 「공항시설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및 제56조제5항에 따른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 및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항공기사고·경량항공기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제2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2. 지방항공청장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 및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 4.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 5. 항공안전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항공안전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현장형 전문가로서 영향력이 인정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무규정

2	안 제6조의3(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등)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조류 충돌 위험 평가 2. 조류 충돌 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조치 사항 3. 조류 충돌 저감 대책 및 야생동물 통제활동 실적 4. 조류 등 야생동물 통제 인력 및 시설, 장비, 교육 훈련,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자문을 얻기 위하여 제6조의2에 따른 항공안전위원회에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제3항) 제3항에 따른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제4항) 1. 국토교통부 2. 지방항공청장 3. 공항운영자 4.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 5. 공군 6. 환경부 7. 농림축산식품부 8.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예방과 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9.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예방과 통제 및 위험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10.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예방과 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시설과 장비, 기술 개발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안 제6조의4(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신설	지방항공청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매 반기마다 시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다만, 민·군 공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함(제1항)	

	공항운영자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조류 충돌 예방 전담인력의 배치, 시설과 장비의 확충,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기구를 설치하여 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야 함(제2항)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토대로 해당 공항에 대한 조류 충돌 위험평가를 매년 시행하여야 함. 다만, 조류 충돌로 항공기 엔진 및 기체 손상이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조류 충돌 보고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항공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조류 충돌 위험평가를 시행하여야 함(제3항)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분기마다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평가 및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4항)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제5항)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과 조류 충돌 위험평가를 평가 및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6항)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의2(항공안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조의3(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등) 신설	
3	안 제6조의4(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신설	

2. 상세 사유

□ 항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의2 신설)

- 개정안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구성
- 개정안과 유사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현재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28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으로 항공안전위원회¹⁾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1)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항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13.7.)를 계기로 국가 항공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 등을 위해 '14년부터 운영
 - 1기('14.6~'16.6, 6회 개최), 2기('16.10~'18.10, 3회 개최), 3기('18.11~'20.11, 3회 개최), 4기('21.4~'23.4,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개최실적 없음), 비상설화('23.5~, 자문 소요 발생시 구성)
-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항공안전위원회는 그 구성 목적을 항공안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항공안전위원회의 기능을 항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문위원회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에 따른 항공안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훈령에 따른 항공안전위원회보다 논의사항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논의 범위 변경에 따른 위원회 운영 경비의 추가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의3 신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및 자문을 위해 안 제6조의2에 따른 항공안전위원회에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 현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4호)」에 따라 각 공항의 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조류

3.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항공정책실장이 요청하는 사항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고²⁾,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 충돌 예방 활동에 대한 협의나 자문을 얻기 위해 조류충돌예방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³⁾, 각 공항의 지방항공청과 공항운영자가 공동으로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⁴⁾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기능과 자문기능이 있어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 충돌 예방 활동에 대한 협의나 자문을 얻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조류충돌예방 위원회보다 그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계획 수립 및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 등의 범위 및 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논의 범위 변경에 따른 위원회 운영 경비의 추가 소요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2)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8조(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① 각 공항의 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4조(조류충돌예방 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 충돌 예방 활동에 대한 협의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조류충돌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2. 지방항공청
3. 공항운영자
4.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국적항공사
5. 공군
6. 환경부
7. 조류와 야생동물 전문가 등

4)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6조(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① 각 공항의 지방항공청과 공항운영자는 공동으로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적(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통해 조류충돌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공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의4 신설)

- 개정안은 지방항공청장이 안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 반기마다 시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공항운영자가 시행계획을 토대로 해당 공항에 대한 조류 충돌 위험평가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항공청장이 공항운영자가 매 분기마다 보고하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임
- 현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644호)」에 따라 각 공항의 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에 대한 전년도 실적 등을 매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있고, 각 공항 소속 직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토대로 해당 공항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평가를 시행하고 있음⁵⁾
- 개정안은 지방항공청장이 조류충돌 위험관리와 관련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각 공항운영자의 조류충돌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각 지방항공청장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 등의 범위 및 평가 항목·기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5)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6조(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제10조(조류충돌 위험 평가) ①각 공항의 운영자는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위험관리계획을 토대로 해당 공항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류나 야생동물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술훈련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재개발원에서 20시간 이상의 조류나 야생동물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